

민원조사 결과

구분	지적 및 조치 요구
국립중앙 박물관	<p>○ 청원경찰 임용 시 병역미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이 개정(2021.8.24.)되어 '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'는 제3조(임용자격)의 단서조항이 삭제되었는데도 국립부여박물관에서는 채용계획 수립 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여 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개정 전 사항인 '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'를 채용공고 시 자격요건으로 명시하여 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제3조를 위배하였음</p> <p>- 개정 이후 부여경찰서에서는 국립부여박물관에 개정내용을 알리는 문서를 시행하였고, 채용담당자는 해당 문서를 확인 후 기획운영과 전체에 공람하였는데도 청원경찰 채용공고 시 이를 간과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공고하였음</p> <p>☞ 향후 채용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국립부여박물관에 '기관주의' 조치 요구</p>